##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신장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438 발의연월일: 2025. 2. 26.

발 의 자:신장식·강경숙·강준현

김재원 · 김준형 · 박은정

백선희 • 서왕진 • 차규근

황운하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그에 대한 불수리 요건을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그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같은 법과 「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의 종료나면제 후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가 아니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.

하지만 사기·횡령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 발생 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나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관련법인 「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전력은 신고 불수리 사유 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, 법인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불수리 사유에 그 대표

자나 임원의 범죄경력 유무 등에 대한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만 가상 자산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에 대한 요건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로서 가상자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규 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.

이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위반 전력을 포함하고, 신고 수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함(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).
- 나.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불수리 요건에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위반을 포함시키고 적용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까지 확대함(안 제7조제3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###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제3호중 "「외국환거래법」 및"을 "「외국환거래법」,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및"으로, "대표자와 임원을"을 "대표자, 임원및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를"로 한다.

1의2. 대주주의 주주명, 사업자등록번호(주민등록번호) 등 대주주에 관한 사항(대주주에 관하여는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금융회사"는 "가상자산사업자"로 본다. 이하 "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"라 한다)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및 그에 대한 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)

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

하여야 한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가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따른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신고) ① 가상자산사업자	제7조(신고) ①
(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	
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
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	
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1의2. 대주주의 주주명, 사업자
	등록번호(주민등록번호) 등
	대주주에 관한 사항(대주주에
	관하여는 「금융회사의 지배
	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
	호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금
	<u>융회사"는 "가상자산사업자"</u>
	로 본다. 이하 "가상자산사업
	자 대주주"라 한다)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	3
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	
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	

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1. · 2. (생략)
- 3. 이 법, 「범죄수익은닉의 규 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률」, 「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 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 률」, 「외국환거래법」 및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|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 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(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 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하다)

4. (생략) ④ ~ ⑨ (생략)

1.·2. (현행과 같음) 3	
「외국환거래법」, 「특정	
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	
<u>법률」 및</u>	
<u>대표자, 임원 및</u>	
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를	
4. (현행과 같음)	
④ ~ ⑨ (현행과 같음)	